[별표 3의5] <신설 2003.8.18, 2005.10.7>

방폭구조 전기기계·기구의 선정기준(제334조관련)

폭발위험장소의 분류		방폭구조 전기기계·기구의 선정기준
가스폭발위험장소	0종 장소	본질안전방폭구조(ia) 그 밖에 관련 공인 인증기관이 0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방폭구조로 인증한 방폭구조
	1종 장소	내압방폭구조(d) 압력방폭구조(p) 충전방폭구조(q) 유입방폭구조(o) 안전증방폭구조(e) 본질안전방폭구조(ia, ib) 몰드방폭구조(m) 그 밖에 관련 공인 인증기관이 1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방폭구조로 인증한 방폭구조
	2종 장소	0종 장소 및 1종 장소에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비점화방폭구조(n) 그 밖에 2종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비방폭형 구조
분진폭발위험장소	20종 장소	밀폐방진방폭구조(DIP A20 또는 DIP B20) 그 밖에 관련 공인 인증기관이 20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방폭구조로 인증한 방폭구조
	21종 장소	밀폐방진방폭구조(DIP A20 또는 A21, DIP B20 또는 B21) 특수방진방폭구조(SDP) 그 밖에 관련 공인 인증기관이 21종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방폭구조로 인증한 방폭구조
	22종 장소	20종 장소 및 21종 장소에서 사용가능한 방폭구조 일반방진방폭구조(DIP A22 또는 DIP B22) 보통방진방폭구조(DP) 그 밖에 22종 장소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비방폭형 구조

비 고

1. 22종 장소의 경우, 가연성 분진의 전기저항이 1,000Ω·m 이하인 때에는 밀폐방진방폭구조에 한한다.
2. 위의 표에서 정하는 폭발위험장소별 방폭구조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서 정하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국제표준화기구(IEC)에 의한 국제규격을 말한다.